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51호 2023. 8. 31.(목)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51호 사천시민간암행어사 수당 등 지급 규정 폐지규정 --- 1
- 사천시 훈령 제452호 사천시수위복무규정 폐지규정 ----- 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210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시행계획 변경 고시 - 3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184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6
- 사천시 공고 제2023-1200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 사천시 공고 제2023-1203호 사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3
- 사천시 공고 제2023-1205호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68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훈령 제451호

사천시민간암행어사 수당 등 지급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민간암행어사 수당 등 지급 규정 폐지규정

사천시민간암행어사 수당 등 지급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훈령 제452호

사천시수위복무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수위복무규정 폐지규정

사천시수위복무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고시 제2023-210호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2-176(2022.08.25.)호로 시행계획수립 고시된 ‘사천시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사업계획(시행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어촌뉴딜300사업(영북항)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어촌·어항 지역을 연계하여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항 기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민소득 증진 및 어촌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소요액 : (당초) 14,967백만원 (변경) 14,849백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의 내용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시행계획 (최초)	시행계획 (변경후)	
합 계			14,967	14,849	
공 통 사 업			9,902	10,792	
	광포항 부잔교 확충	폭 5.2m, 연장 60m	335	327	
	영북항 다목적방파제	연장 100m(경사제 25m, 직립제 75m)	2,635	2,821	
	영북항 주차장	면적 691.6㎡	55	51	
	영북항 안전휀스	메쉬형 울타리 98m	6	6	
	산분령항 주차장	잔교식(폭 14m, 연장51.5m)	2,078	1,882	
	실안항 물양장 조성	잔교식(폭 15m, 연장51.0m)	2,010	2,430	
	실안항 방파제 확충	증고 232m, 신설 30m	1,939	2,354	
	실안항 계류장	폭 3.2m, 연장 65m	327	397	
	실안항 어구보관창고	면적 273㎡	517	524	
특 화 사 업			1,071	1,074	
	산분령항 다목적회관	면적 199㎡	1,071	1,074	
	산분령항 해상좌대낚시터		-	-	
지역역량강화			1,072	1,072	
부 대 비 용			2,922	1,911	

○ 사업의 구역 : 사천시 실안동 산4-1번지 영북항의 3개 항(광포항, 산분령항, 실안항)일원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5. 사업예정기간

○ 2019년 1월 1일 ~ 2023년 9월 30일

6. 사업의 효과

- 정주여건 개선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배후 어촌 및 어항의 기능 향상
- 잠재된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어촌마을의 활력 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사천시청(해양수산과)

8.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붙임조서 참조”

9. 기 타

시행계획 관련 서류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055-831-3125)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붙임 :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실안동	1187-3	잡	1,694	800	사천시					
실안동	875-21	잡	1,579	400	해양수산부					
실안동	1187-2	도	1,642	45	국토교통부					
실안동	1096-41	잡	200	200	사천시					
실안동	1096-51	잡	550	550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공고 제2023-1184호

도로명 변경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 변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31.

사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3. 8. 31. ~ 2023. 9. 14.(14일간)

2. **공고내용** : 도로명 변경 의견수렴

3.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도로명 변경 조서 및 위치도(별첨)

나.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4. **의견 제출방법**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등으로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 편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나. 전 화 : 055-831-2822 (FAX: 055-831-6929)

5. **도로명의 결정 절차**

도로명(안) 마련	의견수렴 공고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고 시
도로구간 설정 및 예비도로명 부여	14일이상	30일이내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붙임】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의견서

성 명 및 기관·단체명		연 락 처	
주 소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신 청 예비도로명			
부여 사유 (변경사유)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천시장 귀하

도로명 변경 조서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변경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	축동산단길	사다리 산 27-1	사다리 산 26-12	도면 참조	1044	8	길	20	1/144	축동일반산업단지 부지	축동면
2	대동산단1길	사다리 135-5	사다리 121-1	도면 참조	118	7	길	20	1/12	'축동산단길' 부여로 인한 변경	축동면
3	대동산단2길	사다리 산 43-28	사다리 133-11	도면 참조	244	10	길	20	1/26	'축동산단길' 부여로 인한 변경	축동면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00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사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이벤트나 행사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여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다. 조문의 구성 체계 보완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항 제목 변경 및 조문 구성체계 보완
(안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 나. 관광기념품 등 제공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다.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780,

FAX : 831-6024)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관광진흥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사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관광이벤트나 행사 참여자에게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여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다. 조문의 구성 체계 보완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3. 주요내용

가. 조항 제목 변경 및 조문 구성체계 보완

(안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 → 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나. 관광기념품 등 제공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다.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규정 신설(안 제4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8. 31. ~ 2023. 9. 20.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관광객 유치 지원)”을“(관광진흥사업 추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자(개인,법인,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을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을 “사업을 추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지원에 관한”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개발·홍보에 관한”을 “개발·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 브랜드 지원 사업”을 “관광자원 및 관광브랜드 개발·공모 사업”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지원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중 “관광기념품 개발 및 시 상징 공모 사업 지원”을 “관광기념품 및 시 상징 개발·공모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0호 중 “행사 지원”을 “사업”으로 하고,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1호 중 “지원”을 “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등 홍보부스 방문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제4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이 다음”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을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략)

1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제목 개정 2020.10.5.]

<신설>

<신설>

<신설>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
은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 예산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
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등

<신 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홍보부스 방문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의3(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이 다음 -----
-----.

1. ~ 3. (생략)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제5조-----

-----.

관 련 법 규

□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 11. 28.]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4. 5. 28.]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03호

사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사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천시 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체계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채용심의기구의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채용원칙, 채용절차, 채용계획의 수립 및 채용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 라. 심사위원 선정 및 제척·회피, 단계별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 마. 채용공정성관리, 합격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채용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제22조~제25조)
- 바. 비공무원 채용절차 관련 표준 서식(안 별지 제1호~제11호)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가. 제출기한: 2023. 9. 20.(수)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서식: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라. 제출기관: 사천시청 행정과

-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전 화: 055-831-2572
- 팩 스: 055-831-6021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사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정안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사천시 근로자 채용에 필요한 체계화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채용심의기구의 기능, 구성,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다. 채용원칙, 채용절차, 채용계획의 수립 및 채용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1조)
- 라. 심사위원 선정 및 제척·회피, 단계별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21조)
- 마. 채용공정성관리, 합격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채용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5조)
- 바. 비공무원 채용절차 관련 표준 서식(안 별지 제1호~제11호)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행정예고: 20일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훈령 제 호

사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을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시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사천시장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시 본청, 직속기관의 부서장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장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5. “관리부서”란 공무원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자의 인사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인사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7.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8.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9.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8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시가 정하는 조례나 규칙 등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제2장 채용심의기구

제4조(채용심의기구) ① 사천시장은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채용심의기구 또는 이에 준하는 심의·의결기구(이하 “심의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의기구는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7항에 따라 구성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② 심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이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기구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③ 심의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기구의 회의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전항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심의기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기구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심의기구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심의기구는 심의기구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장이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제3장 채용

제7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 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채용권자의 의무) ① 채용권자는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문제, 면접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되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채용절차 등)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3. 인·적성검사
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5. 면접전형

②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4항에 각 호에 따라 채용공고가 생략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면접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을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인성·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 채용수요가 발생한 사용부서는 채용 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리부서와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②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채용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를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자체 수립한 채용계획에 따라 이행한 후 그 채용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광고) ① 공무원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사천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공고기간 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심의기구 심의·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③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의 채용공고절차에 관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채용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인원이 적어 추가 채용공고하는 경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4.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④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⑤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관리부서는 공무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④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채용권자는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회피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④ 응시자가 심사위원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채용권자에게 제출하고,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채용권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시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원서접수) ①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입사지원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5. 기타 채용광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채용권자는 채용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제15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필기시험 등) ① 채용예정 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해당 채용계획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별표2 채용시험 가점기준에 따라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중 별표2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해당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9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에 대한 응시자격·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 ③ 채용권자는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 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 계획 수립 시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채용권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제21조(채용결격사유)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를 따른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9호
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제4장 채용공정성 관리

제22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채용권자는은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채용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23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②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4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과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25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입사지원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5. 결격사유 서약서 1부
6. 공정채용확인서 1부
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6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으로의 전환) 채용권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공무원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응시자격 기준표

자격증·경력을 요하는 제한경쟁채용

구분	자격기준
시설관리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이면서, 자격취득 이후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원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대형승합차 경력 1년 이상인 자
조리사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조리”의 조리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사무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사회형평적 인력운용을 위한 제한경쟁채용

구분	자격기준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문화가족

[별표 2]

채용시험 가점 기준

구 분		부가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면접시험 유의사항 안내문

면접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공통)

- 응시자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언급 시 발언 제지
 - * 친·인척 중 유명 인사나 고위직이 있다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 가족관계, 사회경력 등의 의도적 전달행위
 - * 시험에 탈락한 경험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
- 응시자에 따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은 삼가
 - * 성별, 연령(학번 포함), 학력(학위소지), 출신지역, 병역, 결혼여부 등
- 정치적인 견해나 태도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함
- 응시자를 무시하거나 권위적·고압적인 발언 등으로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주의
- 면접시간 중 화장실 출입, 휴대전화 사용, 졸음 등은 수험생 주요민원 제기 요인이므로 유의
 - ※ 시험보안관계상 중식시간 등 시험실을 비우는 시간대는 일체의 면접 관련 서류를 심사위원 회의장으로 가지고 오시기 바람
 - ※ 면접종료 후에는 모든 면접자료를 시험시행본부에 반납하여야 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

◇ **피해자**: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예: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 필기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 서류 단계 피해 →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예: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 필기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필기시험 재실시

- 서류 단계 피해 →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前이라도 우선 시행**

■ 필요시 한시적으로 정원의 인력으로 허용

■ 사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본 서식은 부서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응 시 원 서

본인은 ()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 년 제 회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지)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사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본 서식은 부서 채용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응시번호	< 미기재 >
성명	(한글)		
생년월일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주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휴대전화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전자우편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우대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우대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 <input type="checkbox"/> <우대사항 1>, <input type="checkbox"/> <우대사항 2>, <input type="checkbox"/> <우대사항 3>		
가점사항	취업지원 대상 분야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층, <input type="checkbox"/> 북한이탈주민,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족		
2. 자격사항 ※ 반드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증명불가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3.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증명불가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 담당업무는 상세하게 작성)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업무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관련문서	○○○○과-0000호		
채용구분	[]공무직 []기간제	전형구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서 약 서

본인은 0000 근로자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사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4. 그 밖에 공정한 시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본인은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사천시의 심사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며, 각종 보안사항 유출 등 채용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사천시장 귀하

채용 심사위원 회피사유서

- 채용부서 :
- 채용분야 :
- 회피대상자 : 명

수험번호	성명	사유	비고

- 회피 사유

- 해당 응시자는 심사위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해당 응시자의 평정에 참여하지 않음

소속

직위

성명

(서명)

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결정서

공무직/기간제 (○○○○○) 면접시험 평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격자 및 추가합격 대상자 순위를 선정하였음을 확인함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 합격자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 예비합격 대상자 명부

순 위	수험번호	성 명	평정점수	비 고
1				
2				
3				
4				

20 년 월 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해당 <input type="checkbox"/>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관계법령 발췌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제5조(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2. 삭제 <2011. 9. 15.>
3. 취업지원을 신청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업체등에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4. 업체등과 복수 추천을 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경우
5. 그 밖에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2. 6., 2023. 3. 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23. 3. 4.>

1. 업체등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업체등이 선택한 취업지원 대상자

2. 업체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택하여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복수로 추천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선택한 사람

3. 제1항 단서에 따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23. 3. 4.>

⑤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취업지원 연령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2022. 1. 4.>

바. 삭제 <2022. 1. 4.>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2. 1. 4.>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22. 1. 4.>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4.>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공고 제2023-1205호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으로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 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마.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14조)
- 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8조)
- 사.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 6011)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으로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정·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 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1조)
- 마.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14조)
- 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8조)
- 사.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제21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31. ~ 2023. 9. 20.(20일)
 - 제출의견: 건
 - 반영여부: 해당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시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에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천시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 경제, 보건복지,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공동협의회장 2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공동협의회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1명으로 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④ 부회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의 증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사항 등

제17조(사무처) ① 협의회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호선(互選)된 공동협의회장이 협의회를 동의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제19조(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51호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민간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2.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제21조(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평가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3. 제19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도시·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정의·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

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

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지방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지방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지방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내용 및 취지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5. 지방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